

의안번호	2200334
의 퇴 인	김선민 의원
회 답 일	2024. 6. 13.
추 계 번호	24C068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의 재정수지적자를 국가가 보전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3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055년에 158.4조원, 2059년에 190.3조원 등 2055년부터 2059년까지 5년 동안 총 876.4조원(연평균 175.3조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55~2059년

(단위: 조원)

구분 \ 연도	2055	2056	2057	2058	2059	합계	연평균
연금급여 국가부담 (안 제3조의2)	158.4	168.6	175.9	183.2	190.3	876.4	175.3

- 주: 1. 동 추가재정소요는 현행법에 따른 국민연금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2022년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수급 등의 실적과 2022년 12월 말 기준의 거시경제변수 추이를 반영한 경제전망치를 활용하여 전망한 것으로, 향후 실적 변화에 따른 변수 전망치가 달라지거나 제도개혁이 이루어지면 추가재정소요의 발생 시기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2. 전망액은 국회예산정책처의 GDP디플레이터(2022.12.기준 전망치)를 적용한 2023년 불변가격 기준의 금액으로 나타냄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의2 (국가의 책무)	국가는 동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보장하고,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부담함	의무지출성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의2 (국가의 책무)	○	- 추가재정소요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결과(2023.3.)를 바탕으로 산출 2022년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수급 등의 실적과 2022년 12월 말 기준의 거시경제전망치를 활용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국민연금의 현행 수입 및 지출 등 재정구조 유지 가정

- 현행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율(9%), 연금급여 소득대체율¹⁾, 연금수급개시 연령²⁾ 등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
- 본 추계는 현행법에 따른 국민연금제도가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을 적용한 것으로서, 향후 제도개혁이 이루어지면 추가재정소요의 발생시기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 현행법에 따른 재정구조를 유지한 상황에서 예상되는 적립금 소진 시점 이후에 재정수지적자 전액을 국가재정으로 부담한다고 가정

- 구체적인 국가의 보장 범위(연금급여에 한정하여 부족분을 보전하거나 운영비까지 고려한 후 적자분을 보전하는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추계서에서는 운영비까지 고려한 후의 재정수지적자 전액을 국

1) 국민연금 가입연도별 적용 소득대체율

구 분	1988~1998	1999~2007	2008~2027	2028년 이후
소득대체율	70%	60%	50% → 40.5% (2008년~: 매년 0.5%p씩 감소)	40%

2)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국민연금법」 제8541호 부칙 제8조)

출생연도	~1952년생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해당연도	~2012년	2014~17년	2019~22년	2024~27년	2029~32년	2034년~
수급개시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가재정으로 부담한다고 가정

－ 이때, 재정수지는 내부거래를 포함하여 산출

□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의 재정수지적자를 국가가 지원할 경우 재원조달 방식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본 추계에서는 재원조달 방식에 따른 추가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 적자성 국채의 발행을 통해 재정수지적자를 충당할 경우, 적자에 대한 보전금 외에 이자비용이 발생하지만, 본 추계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소진된 이후부터 발생하므로, 추계기간은 적립금 소진 시점 이후 5년간으로 함

○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 3월 국민연금 재정전망³⁾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은 2055년에 소진이 예상되므로, 추계기간은 2055~2059년으로 함

－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 3월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은 2022년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수급 등의 실적과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산출한 거시경제전망치를 활용한 것으로, 향후 가입·수급 실적 추이의 변화나 거시경제변수 전망치의 변화가 있을 경우, 추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추계기간이 장기이므로 2023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제시

○ 불변가격은 GDP디플레이터로 각 연도 발생금액을 나누어 산출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현행 「국민연금법」이 급여지급을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 본 추계서는 법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급여지급 보장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그 추계결과를 제시

3) 대한민국국회, 「공적연금과 재정전망」, 2023.3.

- 현행법 제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사업을 맡아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에 명시된 급여의 종류와 지급액은 이미 보장된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음
 - － 이 경우 개정안에 따라 법률에 ‘지급보장’ 문구를 삽입하여도 기존에 확정된 사실을 보다 명시적으로 법률에 표현하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음
 - 반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으므로 기금 고갈 시 연금의 감액이나 수급권 무효화 등이 우려된다는 시각이 있음
 - － 현행법에 지급보장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개정안에 따라 지급이 보장되면 기금고갈 시점 이후에 발생할 연금지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재정소요로 볼 수 있음
- 본 추계서는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의 추계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 모형에 따른 전망 결과를 활용
-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모형은 인구변수와 거시경제 변수를 바탕으로 수입 및 지출을 추계하고 재정수지를 계산한 뒤 이를 전기 적립금에 가감하는 방식
-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 3월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적립금 소진 시점은 2055년이고, 이 시점부터 국민연금기금 수입은 2055년 77.8조원에서 2059년 73.7조원으로 감소하는 반면, 지출은 동기간 236.2조원에서 264.0조원으로 증가(2023년 불변가격 기준)
- 이에 따라 재정수지적자는 2055년 158.4조원에서 2059년 190.3조원까지 증가(2023년 불변가격 기준)

[표 2] 국민연금 적립금 소진 이후 재정수지 적자 추계: 2055~2059년

(단위: 조원)

	2055	2056	2057	2058	2059
수입(A)	77.8	74.2	74.0	73.8	73.7
지출(B)	236.2	242.8	249.9	257.0	264.0
재정수지 (A-B)	△158.4	△168.6	△175.9	△183.2	△190.3

주: 전망액은 국회예산정책처의 GDP디플레이터(2022.12.기준 전망치)를 적용한 2023년 불변가격 기준의 금액으로 나타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의 재정수지적자를 국가가 보전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3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055년에 158.4조원, 2059년에 190.3조원 등 2055년부터 2059년까지 5년 동안 총 876.4조원(연평균 175.3조원)으로 추계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55~2059년

(단위: 조원)

	2055	2056	2057	2058	2059	합계	연평균
연금급여 국가부담 (안 제3조의2)	158.4	168.6	175.9	183.2	190.3	876.4	175.3

주: 1. 동 추가재정소요는 현행법에 따른 국민연금제도가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2022년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수급 등의 실적과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산출한 거시경제전망치를 활용하여 전망한 것으로, 향후 실적 변화에 따른 변수 전망치가 달라지거나 제도개혁이 이루어지면 추가재정소요의 발생 시기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2. 전망액은 국회예산정책처의 GDP디플레이터(2022.12.기준 전망치)를 적용한 2023년 불변가격 기준의 금액으로 나타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2022년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수급 등의 실적과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산출한 거시경제전망치를 활용한 것으로, 향후 가입·수급 실적 추이의 변화나 거시경제변수 전망치의 변화가 있을 경우, 추계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현행 「국민연금법」의 급여 지급보장 여부에 대한 해석에 따라 추가재정 소요 유무가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추계서는 법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 목적에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결과를 제시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assembly.go.kr